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중복 규정 정비〉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584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58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4.

(3) 회 부 일 : 2025. 4.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복 규정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및 인력의 자격, 채용,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illegible]

현행	개정안
⑤ ~ ⑦ (생략)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② (생략)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2. 검토의견

-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은 제33조제4항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직원의 자격, 배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4조제5항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법」 제33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문인 반면, 제34조는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수행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 및 인력의 배치 등과 관련한 유사한 내용이 서로 다른 조문에 중복되어 있는 현행 구조는 법조문의 체계성과 기능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임.

현행 「발달장애인법」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중복 규정되어 있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및 인력의 자격, 채용,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 판단됨.

<개정안에 따른 현행법 정비 사항 정리>

구분	현행법	⇒	개정안
직원 및 인력의 자격, 채용, 배치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	⇒ (제33조로 일원화)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
전문 인력 배치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 채용에 관한 사항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 (제33조로 이관)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 다만, ① 개정안 제33조제4항과 제5항은 각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는 전문 인력의 근거와 발달장애인 당사자 채용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6항에서는 “직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전문 인력과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제6항의 ‘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33조제6항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안이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② 아울러, 개정안 제33조제4항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33조제3항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비해 법적 의무 수준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의 내용을 현행 규정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배치되는 인력과 관련된 규정이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조문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을 구체화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지원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됨.

그러나 개정안 제33조④항에 (중략) ‘~할 수 있다’와 같은 선택적 권한의 규정보다는 현재 제34조③항 규정의 (중략) ~ ‘노력해야 한다’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권고적 의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502